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. 11. 20 선고 2018가단1463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제일리츠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1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. 2. 15. 접수 제1214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김희석

별지